

【 2018.1.18(목)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조달청  
장 초청 건설업

계 간담회’에 참석.

工期 연장땐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새 하도급법 '논란'

# 건설연 “건설하도급 특성 무시한 과도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른바 ‘갑(甲)·을(乙) 대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점에선 타당하지만, 건설하도급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지난 16일에는 이를 법제화한 새 하도급법을 공포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과 유통 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이은 새 정부의 ‘갑을 대책’ 3탄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늘어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철근가공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이번에

대부분 민간공사 기간 연장땐 원도급 대금 증액 불허가 관행 원도급 증액 받지 못한 상황서 하도급대금 증액땐 피해 우려

원도급=대기업, 하도급=중소? 원도급자 98.4%가 중소기업

제·개정됐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장치를 둔 것이다. 특히 철근가공업의 경우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비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 받침대 제작비 △공사 현장 상황으로 인한 철근 하차 지연비용 등은 원사업자 부담으로 명시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 대기업 7점, 제조·용역 대기업 6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준 원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추가했다. 지금은 기술 유용,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등 47가지 불공정행위에만 징벌적 손해를 적용하고 있다.

전영준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원도급 대금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원도급 증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되면 원도급자만 일방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원도급=대기업, 하도급=중소기업’이란 등식도 현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설 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대부분 중소기업이다”면서 “중층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돼 전속적 거래 구조가 발생하기 힘든만큼 일률적 법 적용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의 98.4%, 전문건설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영업 이익률을 봐도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보다 평균 1.3%포인트 높다.

김태형기자 kth@